

제405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4월12일(수)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
2.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
3.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
4.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
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2)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6)
1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9)
1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4)
17. 조약 체결 절차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2)
1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2)
19.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
20.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고민정 의원 등 93인 발의)(의안번호 2120050)
21.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22.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38인 발의)(의안번호 2119978)
23.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0)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2)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9)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4)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6)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5)
30. 현안보고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상정된 안건

1.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 3
2.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 3
3.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 3
4.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3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3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 3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 3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3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3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 3
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2) 5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 5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6) 5
1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9) 5
1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4) 5
17. 조약 체결 절차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2) 5
1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2) 5
19.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 5
20.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고민정 의원 등 93인 발의)(의안번호 2120050) 5
21.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5
22.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38인 발의)(의안번호 2119978) 5
23.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0) ... 5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 5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2) 5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9) 5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4) 5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6)	5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5)	5
30. 현안보고	7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신규 안건들을 상정한 후 현안보고 및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82)
2.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0)
3. 재외동포기본법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59)
4.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4)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6)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5)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99)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2)
1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6)

(15시06분)

○위원장 김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외동포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들 안건을 심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태영호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태영호 법안심사소위원회 태영호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과 4월 3일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법률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이 중 8건을 의결하였고 4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전해철 의원, 안민석 의원, 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둘째,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셋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었으며 넷째,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치하고 다섯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재단법의 폐지일이 2023년 6월 5일이므로 업무의 연속성, 동 재단 직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하여 센터의 설립일을 재외동포재단법 폐지일에 맞추었으며 재단 직원의 고용 승계에 대해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한시적으로 초과 현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부칙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김홍걸 의원, 윤건영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의 주요 발급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둘째, 관용여권에 대한 발급 현황조사를 의무화하며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절차를 규정하고 셋째,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넷째,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을 의결하였고 2건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행령에 의해 관련법이 준용되어 이루어지는 동식물 검역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준용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할 안건들에 대해 축조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여권법 등 일부개정법률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별로 상세히 심사를 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정법률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간략히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는 또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및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각각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외동포기본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조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김홍걸·윤건영·최인호·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조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0항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에 회부 후 숙려기간이 도과한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92)
13.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07)
1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6)
15.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9)
16.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4)
17. 조약 체결 절차법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2)
1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2)
19.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2)
20.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고민정 의원 등 93인 발의)(의안번호 2120050)
21.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의안번호 2120611)
22.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38인 발의)(의안번호 2119978)
23.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90)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87)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0042)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79)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54)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06)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315)
(15시14분)

○위원장 김태호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법안 등에 대한 제안 취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수석전문위원,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외교부 소관 법률안 8건, 결의안 3건 등 총 1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외교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동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공공외교사업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공외교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은 낮지 않은 수준이며,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개별 공공외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초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분담금 납부 약정 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 이전에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에 재정 공여를 약속하는 경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이행의 관점에서 분담금 납부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교부는 이 법률이 작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법률 이행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재단사업에 재외동포사회 내 경제교류 증진 및 한글·역사·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재외동포재단법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금년 6월 5일에 폐지될 예정이지만 동 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등을 재외동포청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하여 검토할 실익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 제안한 재외동포 경제협력 지원 강화는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와의 경제협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재외동포 교육지원사업은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약 체결 절차법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 중단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진사고 등 발생 시 건축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으로부터 구호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구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호대의 편성은 재난의 특성이나 구호대상 국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도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규칙을 통해 1년 이내에 위반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회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과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회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은 1974년 1월 30일 서명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정 미이행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협정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양국 정부가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협정의 종료는 새로운 동중국해 질서를 수립해야 하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고 동북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동 협정을 통한 공동개발구역이 지속 유지되어 양국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므로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은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협정 위반 여부의 조약법 해석, 주문 문구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태호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전들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진 전문위원 정홍진입니다.

오늘 상정된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개성공단사업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에 대한 보상을 통해 이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와 함께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중단 이후 현행 법령에 의거한 피해 보상과 정책지원이 있었던 점, 대북투자의 위험 예상 정도, 경협보험 등 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자의 요청을 통해서도 거주지 보호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추가적인 거주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호기간의 단축 및 연장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요청권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전국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비수도권 정착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약 35%가 거주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40인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모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원에 포함시키기보다는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그 참여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해 드리지 않은 개정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태호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혹시 대체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은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현안보고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15시23분)

○위원장 김태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재정 간사님.

○이재정 위원 저희가 상임위 개최를 예정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 한국 국가안보실을 도·감청한 정황이 미국 중앙정보국 기밀문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줄속으로 추진되면서 우려했던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유출된 건데요. 사실 그 내용도 국회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동맹의 토대는 상호 존중과 신뢰로서 이번 사건은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현안의 중대성이나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화의 당사자인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현재 파견되었던 본 부서인 외교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소장,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 국회 상임위의 배석 대상인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현안과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배석을 요청하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하라는 이런 오만한

얘기를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 사안의 사실 확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하신 상황에서 사실 확인의 주요 당사자 중의 한 명인 이문희, 우리 소관기관의 공무원조차 출석하는 데 있어 협조하지 않는 지점들이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감청 당사자의 당해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입장을 표명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사실에 부응하는가 아닌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문희 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소장, 본 상임위 지금 진행되는 과정 중에 배석하도록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국민의힘, 여당에도 말씀드렸고 당사자에게는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러 오라고도 했는데도 결국은 상임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에 반차를 썼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현안의 중대한 주요 증인을 누군가가 빼돌린 것 아니냐라는 정말 민망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 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심각한 공백이 있고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드시 소관 주무부처로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본 회의에 주요 당사자로서 오늘 오후 반드시 출석하여 관련된 내용 진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권위로써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석기 간사님.

○김석기 위원 지금 민주당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부장관이 분명히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날조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대통령실 이전을 갖다 붙이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이었습니다. 과거 청와대보다도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문건 내용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

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관계자의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당 간사님하고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전원위원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사실 모두가,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안질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네 분 하고 우리 당에서 세 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불러오라, 그렇게 해서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증인·참고인 채택이 여야 합의가 없이 바로 불러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오늘 이 회의를 본래 여야 간사 간 합의된 대로 3명, 4명 질의를 정확히 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태호 잠깐만요, 오늘 회의는 실제 현안질의 일곱 분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회의라는 진짜 시급한 전체회의 속에서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론을 감안해서 여야 간사 간 또 저와 오늘 일곱 분으로 발언을 제한해서 끝나면서 바로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합시다. 계획한 대로, 오늘 서로 의사진행발언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회의가 진행이 저는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대로 발언 순서대로 하면서 방금 추후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좀 더 협의하는 것으로, 회의는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윤호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제가 공무원과 관련해서 공무원 출석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발언을 지속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생각인데 그러면 윤호중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는 걸로……

○위원장 김태호 예, 윤호중 위원 발언……

○윤호중 위원 제가 이 회의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질의순서표 해서 7명의 위원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7명으로 제한하는 명단을 버젓이 문서로 내놓는 회의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짧게 의정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외교현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가벼운 일입니까? 정말 중대한 사건이,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외교현안으로 이거 이렇게 7명 간단하게 1시간 동안 질의받고 끝내자, 이거 위원장 말씀도 얼토당토않고 김석기 간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도대체 간사 간의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이재정 간사는 ‘이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말입니다. 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전원위원회에……

○**김석기 위원** 협의를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전원위원회 출석을 위해서 1시간으로 제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원위원회는 본회의가 아닙니다. 전원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위원회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위원회는 국회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5분의 1, 국회의원 5분의 1의 출석으로도 개회가 가능하고 그리고 의결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4분의 1 이상만 출석을 해도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위원회를 마치 본회의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 외통위의 상임위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한다 이견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또 여당 간사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 어떤 사안이 터졌습니까? 대통령실이 도청을 당한, 도·감청을 당한 이런 사안이 터졌습니다.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우리 줄 것 다 주고 대통령께서 뒤통수 맞고 오셨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아직 미국 가지도 않았는데 코빼가 부러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안을 놓고 이렇게 대충 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7명 간단히 1시간 하고 끝내자 이런 말씀은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 제가 팩트 확인을, 입장을 짧게만……

○**위원장 김태호** 잠깐만요, 잠깐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까지도 지금 포함시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원회의가 19년 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당론도 전원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당론으로 잡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여야 간의 간사가 오늘 불가피하지만 또 현안이 있기 때문에 회의는 하되 1시간으로 7명으로 제한하자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사안이가벼워서 우리가 1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매사 다 중요합니다.

방금 또 일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또 때로는 지도자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처음 만나서 모든 걸 할 수 없듯이 이제 현재진행형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모든 걸 다 퍼 줬다 이런 표현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오늘 어차피 저는 1시간 내라는 또 7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추가적인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간사 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더 논의하고 그대로 순서대로, 회의를 질의하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정 위원** 제가 짧게만……

○**황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 위원들 빼고 나머지 다 전원위원회 참석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질의하는 위원들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본회의장 가시면 돼요.

○**위원장 김태호**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한 것을 협의를 지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항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제가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사가 합의한 내용인지 아닌지.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이재정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미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재외동포기본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가 본 회의를 여는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현안질의의 영역은 간사 간의 협의 영역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안질의

요청하는 위원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상임위가 개최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여당에서는 그렇다면 상임위를 열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7명이라고 순서상 내세워져 있는 것 저는 순서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되짚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건 간사 간 협의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그 부분이 협의되었다는 이유로 회의가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부득이 선회해서 그것을 존중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다줄 수 있고 대한민국 주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정변경도 있고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상임위, 국방위도 아니고 정보위도 아니고 우리 외교부가 주관 부서입니다. 심지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2013년 이런 도·감청 사례에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 국민 방문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엄중하게 판단이 필요하고 그것은 대통령실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위를 가진,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중차대한 때고 이것은 지금 열리고 있는 전원회의의 논의에 필적할 아니, 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시급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우선 순서대로 진행을 하되 이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를 이어 가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제한할 권리가 위원장님께도 없음을 밝힙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여당 간사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합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 간사도 정상이 아닌 것이고 그 가운데 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오늘 질문자를 7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민주당이 4명으로 하자고 그렸습니다. 우리 당은 2명만 하라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2명이나 3명까지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저를 몰아세우십니까? 합의를 했는데 왜 저를 몰아세우세요? 왜 위원장님을 그렇게 우습게 만드세요?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합의된 대로 운영을 하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본 가서 다 퍼 주고 뒤통수를 맞고 왔다’ 그런 표현, 과한 표현 아닙니까? 가서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윤호중 위원 내가 퍼 줬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속기록 한번 보시라고요.

○김석기 위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윤호중 위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김석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인된 게 아니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다른 나라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는데 그런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렇게 정치공세로 상대한 나라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합의된 대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합의를 하든지.

○위원장 김태호 자, 일단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팩트는 달라요. 존 커비는 위조라고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자, 이제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요.

오늘 합의한 대로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협 위원 김정협 위원입니다.

참 국회가, 국회에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공무원은 반차를 내고 도피하고 위원들의 발의 권한을 간사 간의 합의로 제약하고, 진실을 규명하기가 싫다는 건가요?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규명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방금 전에 발표한, ‘미 국방부장관, 기밀 문건 유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사하고 문건 유출의 출처와 범위를 찾아낼 때까지 살살이 살피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방금 전.

이미 그 전에 존 커비 미 NSC 전략조정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문건의 유출 사실을 인정했습니

다. 그리고 미 국방부 대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실의 안보실 차장의 발언입니다. ‘상당수가 위조이며 도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그리고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외교부장관님, 악의를 갖지 않고 선의로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논평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지금 위조가 됐다고 그러면 미 정보국에서 만든 CIA 정보보고서가 위조됐다는 얘기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지금 미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실 확인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가안보에 대형 구멍이 뚫렸습니다. 대형 보안 사고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의 우리 대통령실의 대응 태도입니다. 위조됐다, 어디의 어떤 부분이 위조됐다는 얘기인지 한마디도 없고 그냥 위조됐다. 언론이 가짜 뉴스를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CIA가 정보보고서를 위조했다는 얘기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얘기인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위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의를 갖고 도·감청을 했다는 정황이 없다’, 그러면 선의를 갖고 도청을 했다는 정황은 있는 건가요?

지금 이런 식의 대응 방식, 주권국가로서 이러한 불법 도청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정부의 태도가 이게 뭐니까? 대통령실의 이 반응을 보면 정말 비굴하기 그지 없습니다. 과연 주권국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드러난 사실 그대로 보면 이미 도청이 자행됐다는 것은 사실이고 미국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위변조된 허위 정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CNN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군사작전을 우크라이나는 변경했습니다. 가짜라면 변경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미 이런 정황들이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도

청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성한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당시에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문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데 국회에서 출석하라고 그러니까 반차를 내고 도피를 합니까?

장관님,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가 있었고 또 한미 국방장관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일단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러한 문건들에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퍼지게 됐는지 이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 양국이 그러한 결과를 공유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협의 정도로 끝나야 될 내용인가요? 과거 이런 도청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다시는 동맹국에 대해서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대응하는 태도입니까? 협의를 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도청이 선의를 가지고 하는 도청이 있습니까?

문제는 과연 지금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시와 도청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지, 우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김경협 위원 국가안보실 김태호 차장은 전에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신원조사도 받지 않고 채용됐습니다. 전혀 보안 감각에…… 보안 사고의 경험과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보실에 그대로 앉혀서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고 또 한미 간에 그러한 결과가 공유되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할 때도 이미 보안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몇 차례 제기가 됐습니다. 그 옆에 바로 미군기지가 있고 미군기지 내 민감정보 수집시설, 도·감청 장치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바로 그 미군기지 옆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제대로 된 보안 조치도 없이 이전했음이 이번에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도·감청이 이루어졌고 어떤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그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수 있겠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용산 대통령 시설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시다만 훨씬 강화된 그런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확인이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경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박진 예.

○김석기 위원 이번 도청 문건 내용 대부분이 미국과 미 우방국들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이 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시다.

○김석기 위원 결국은 이게 미 우방국 등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혼란을 주는 이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정보전을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벌인 그런 일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도 해당되는 몇 개 나라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확인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또 프랑스나 영국 각각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유출 문건 대부분이 허위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못 갔습시다. 그 핵심 관계자와 면담도 못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 극좌 폭력집단과 연관성이 있는 진료소를 방문해서 물의를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 절차를 따르면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이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인 만큼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단에 우리 한국인 전문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과학적이고 완벽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IAEA 안전 기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또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IAEA와 관련 활동 초기에서부터 우리 전문가와 또 전문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토,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지금 일본 재일동포들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은 사실 남의 나라에 사는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정말 고맙다고 실제 눈물을 흘린 동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정부 때 철저하게 망가뜨려진 한일 관계를 이제 가까스로 복원해 가서 정상화시켜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막무가내로 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 언론에 막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동포들의 반응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질 리가 없는데 우리 동포들의 입장은 어떡하라는 말이나?’ 이런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그동안에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재일동포들께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부의 해법안 제시로 새로운 한일 협력의 시대가 열리면서 재일동포들께서도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한일 정상회담 그 당시에는 현지

분위기가 양국의 경제단체장들이 정말 대환영을 했고 그다음에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첨단소재 관련 국내 기업들도 대환영을 하고 있지요. 각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기대감에 정말 많은 분야에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해 보자고 하는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지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아니, 7분 내에 포함시킵니다.

○김홍걸 위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태호 의사진행발언은……

○김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들어 주세요.

○이재정 위원 자료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아, 그래요?

○김홍걸 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태호 오케이.

○김홍걸 위원 외교부 아태과의 업무 상태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아태과에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제출하지를 않고 있고요. 대정부 질문 때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 차관이 직접 인권위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답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실 방문 보고, 설명 요청을 4월 5일에 정식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뿐만 아니라 어떤 회신도 없기 때문에, 지난주 초부터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습니다. 심지어 한 달 전에 강제동원 해법을 보좌진들 앞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요구한 자료를 이제서야 제출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조실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조실 사람 말이 자기들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아태과가 제대로 출근은 하고 있는지,

일은 하는지,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외교부장관께서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수시로 국회에 보고와 설명을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좀 따지려고 했다 참았는데, 행정부인 외교부를 감시하는 게 저희 국회가 할 일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고 국회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도 되는 것인지, 외교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주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호 장관님.

○외교부장관 박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거나 또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아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미흡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장관님, 한 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걸 위원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상당수 위조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미국은 그 중에 일부 위조됐다고 그러고 우리 측에서는 대부분 위조됐다고 그러고 말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가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인지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고요. 아직 이렇게 사실 확인이 다 안 된 상태인데 미국 법무부에서도 조사 중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 명백하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 대화 부분도 전부 거짓이라는 것인지 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박진 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부연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해당 문건이 전체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까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굳건한 한미 정보 교류를 통해서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홍걸 위원 이번 자료 유출된 부분, 인터넷에 유출된 지가 한 달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정확히 언제 그것을 파악했습니까? 언제 알게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제가 어느 정부 부처에서 언제 처음 알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주말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홍걸 위원 언론에 터진 후에야 아셨다는 얘기네요?

○외교부장관 박진 예, 지난 주말이니까 그렇습니다.

○김홍걸 위원 아니, 미국 정부는 한 달 전에 이미 인터넷에 유출된 걸 알고 있었다는데 우리 정부에 말도 안 해 줬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홍걸 위원 외교부장관님이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 어느 나라가 됐든 도청을 시도한다는 것은 국익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게 사실이라면?

○외교부장관 박진 예,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 시도가 분명히 없었다 이런 확답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 건 아예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에서 유출 경위 수사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도청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정부 측에서 대부분 위조라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변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

신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한국 당국자들이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고 한다’ 하고 아예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김홍걸 위원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외교부장관 박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지금 미국 측 조사가 사실이라고 다 나온다면, 도청했다는 게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때 항의는 하실 겁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사실 확인 결과에 대해서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우리 대통령실이 만약 도청을 당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체포해서 처벌해야겠다는 방침이 정부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이 문제는 한국, 미국을 막론하고 사실 확인을 확실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 도청 범죄를 저지른, 간첩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수사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한다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게 어떤 옛날 조선시대의 조선과 중국의 관계처럼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우리는 한미동맹을堂堂하게 동맹국으로서 책임과 의무 또 권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러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동맹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확인에 입각한 그런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 전에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도청 의혹이 나왔을 때 메르켈 총리는 ‘휴대전화 도청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독일 주재 미국대사를 소환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자신에 대한 도청 의혹을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고 과거에 브라질 대통령은 국민 방문 취소까지 하고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에게 사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자해행위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과거에 이런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서 필요한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 확인을 우선 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걸 위원 지금 이렇게 가해자를 변호해 주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이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당당한 외교의 모습입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명확한 관계를,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상현 위원 외교부장관님, 어제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 한미 양국의 국방부장관이 통화를 통해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가 됐다, 의견의 일치를 봤다라고 하거든요. 상당수가 위조가 됐다 그러면 일부는 진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전체 문건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윤상현 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외교부장관 박진 일단 두 장관 간의 그러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일부는 진짜고 상당수는 거짓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진짜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우회 지원을 검토한 건 사실이지요. 그리고 결국 155mm 포탄 10만 발 미국에 팔았습니다. 맞지요? 그건 진짜지요?

그러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하고 이문희 외교

비서관하고 결국 33만 발을 폴란드에 우회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그 말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장관님, 외교부장관으로서 뉴욕타임스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윤상현 위원 뉴욕타임즈 기사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이 대부분이 진짜다라고 얘기합니다. 포 더 모스트 파트(for the most part)라고 얘기합니다. 리얼(real)이라고 얘기합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실 전략소통조정관은 섬 오브 템(some of them), 일부가 조작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라는 게 결국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디스코드, 트위터, 텔레그램 통해서 전파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사이에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물건이 왜곡이 됐느냐 왜곡이 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러면 미국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불법 감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그건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렇지요. 아직까지 모르지요.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해야지요. 우리가 미국 측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불법 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해요.

장관님, ‘타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윤상현 위원 ‘타짜’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 국제 관계, 영원한 적국·우방국 없습니다.

영국과 미국 보십시오.

1812년 전쟁 치렀지요. 1870년 돼지전쟁 치렀지요. 1930년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를 전부 독립시키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도청한다, 저 계속해서 얘기 들어 왔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레이저빔을 쏘서 유

리에서 대화하는 것을 벽 바깥에서 음파를 당겨서 도청 시도했습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국가안보국 전직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은 동맹국을 포함해서 38개국 대사관에 대해서 도·감청하고 있다’. 한국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인 판단이 ‘아, 우리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불법 도·감청을 할 수 있겠구나’ 의혹을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물론 한미관계,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압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라도 기밀 문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됩니다, 끝까지. 진상규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당연히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지요.

글로벌 중추 국가, 맨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맞는 한미관계 동맹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된다. 주종 관계의 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을 드렸고요.

○외교부장관 박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대등한 동맹으로서 논의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한미 간에 강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건도 사실 확인을 엄중하게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우리 스스로 미국이 불법 감청·도청 안 했다 이렇게 실드(shield) 칠 필요는 없다, 정확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우리의 입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입장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객관적·과학적인 기준으로 또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러한 검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전임 문재인 정부하고 우리 윤석

열 정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같지 않습니까?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결국 같은 방향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서태평양 국가 마셜 군도 같은 데는 벌써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연기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방류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빠르면 5월, 6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IAEA 또 여러 나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가 IAEA와는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IAEA 라파일 그로시 사무총장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IAEA가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제 기준 또 과학적·객관적인 기준 이것을 엄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습시다.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윤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제가 할 질의의 상당 부분을 윤상현 위원님이 하셔서……

비슷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보면 저는 두 가지 쟁점이 국가적 쟁점이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 도·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도·감청을 했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실의 보안 체계는 현재 안전한가, 미국에 혹은 북한이나 제3국으로부터 또 뚫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 보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늘 두 가지를 점검하지요.

(김태호 위원장,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우방국에 대한 도·감청은 상당히 큰 국가적 외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언론이 근거 없는 보도를 했다고 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백악관 대변인이나 국무성 대변인이 바로 반박 논평을 하지요. 우리 우방국 사이에 그러한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요.

이번에 아무리 지켜봐도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백악관 대변인이나 국무성 대변인 이름으로 우방국 대한민국에 대한 도·감청은 전혀 없었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까? 제가 사실만 물어보는 거예요. 발표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아직 그런 건 보지 않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발표가 없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거나 사실로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외교적·정무적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미 국무성이나 외교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들이 논평하는 시스템을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한 미국의 책임 있는 외교 담당 책임자들이 이 문건의 일부 문제가, 이 보도의 일부의 문제는 보여지지만 대체로 이분들은 보도의 조작성 문제보다는 어떻게 이런 문서가 유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 보안책의 점검에 더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밀자료가 유출된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 점검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행위만 봐도 도·감청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박진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없이는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세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미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아니, 협의라는 말은 지난번 논의처럼 이상한 말이고요. 요청을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우상호 위원 우리는 다른 외교적 현안은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협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도·감청을 당한 나라일 수 있을 때는 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협의가 아니라. 요청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이 어떤 건지 우리와 공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한미동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훼손되면 안 된 다라고 하는 고민을 외교 당국자와 정부는 당연히 하게 되겠지요. 저는 그걸 지지합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더 해쳐지거나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을 지키시는 건 좋은데 그 원칙이 앞에 서고 도·감청 문제가 2위에 서는 것은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설사 도·감청이 됐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해치면 안 되니까 문제 삼지 말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저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저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장관님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한미동맹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도·감청 문제가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문제 삼지 말자는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저는 사실 확인도 중요하고 또 한미동맹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 위원 김태효 차장의 최근 행보와 발언이 바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태효 차장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내용의 사실관계가 상당수 조작되었다. 그러나 악의적 도·감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아주 어록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어록은 아까 다른 분이 지적을 했으니까요.

미국이 납득할 만한 사실 해명을 아직 제대로 해 온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박진 지금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대로 채널이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아니, 그걸 NSC에서 공유할 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상호 위원 저는 어쨌든 이렇습니다. 미국이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 해명을 해 주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의 외교부…… 차장이라는 분은 어떻게 이 전모를 다 파악해서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김태효 차장은 뉴욕타임스가 확보하고 있는 도·감청 문건 전체를 다 파악해서 이미 그것의 진위를 상당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결론을 2~3일 내에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거지요?

이 분은 어떤 근거로 이것이 상당 부분 조작이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대통령실……

○우상호 위원 미국이 연락을 해 주지도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 아직 안 해 줬고 뉴욕타임스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왜 김태효 차장은 이 모든 것이 상당 부분 조작되었다라는 식으로 미국을 감싸는 얘기부터 하면서 미국에 방문했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나고 나서 한미 양국 간의 장관급 전화 통화가 있었고 초기에 판단은 한미 간에 그렇게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저는 김태효 씨의 태도는 장관님과 다르게 도·감청했어도 대한민국이 피해를 봤어도 한미동맹이 깨지면 안 되니까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주권 국가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감청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도·감청을 당해도 아무 항의도 못하는 나라입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그런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당당하게 미국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위원 악의적 도·감청과 선의적 도·감청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김태효 차장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호 위원 저는요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일본과의 굴욕 외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자존심 상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도·감청을 당한 나라가, 대통령실이 뚫린 나라가 항의조차 못하고 마치 그 사실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은폐하려고 한다고 보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 가서 자존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방국이어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항의의 목적은 건강한 한미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지만 한미 관계를 파탄 내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하는 것이 한미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접근 태도는 대단히 굴욕적이고 대단히 무마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장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앞으로 대처하실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박진 이 문제는 우리의 주권과 또 국익 차원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기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 장관님,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언론에서 제일 떠들고 있는 대목이 바로 김태호 차장의 ‘악의적 도청은 아니다’ 이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방국에 대한 그 어떤 경우의 불법 도청 이건 허용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점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다만 외국 정보기관들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불법 도청·감청하지 않는 이 료를 다 지키고 있는가요?

○외교부장관 박진 일일이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정보 활동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국정원은 혹시 외국에서 이런 정보 수집을 위해서 도·감청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박진 그것은 국정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위원 독일 메르켈 총리가 그때 독일 인사들과 정부기관에 대한 미국의 불법 도청에 대해서 항의하고 했다는 자료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달에 역으로 독일의 정보기관인 BND가 미국의 백악관을 비롯해서 100여 개의 기관들과 인사들에 대해서 불법 도청했다는 자료가 터졌습니다. 혹시 그때 독일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그때 독일 BND 국장 시종일관 NCND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보기관 책임자로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시종일관 이런 입

장을 취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불법 도청하는 것이 우방국들 사이에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자체가 일단 외국에서는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저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외교부 주변에 외국 대사관들이 몇 개나 되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여러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제일 가까운 대사관이 어느 대사관입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길 건너에 있는 미국대사관입니다.

○태영호 위원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그런 불법 도청·감청을 막기 위해서 업무 공간에 구체적인 보안 대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가요?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가 보안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그런 도·감청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주요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이 지리적 측면을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청사 주변에 외국 시설, 외국 공간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정부기관이 도·감청에 취약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 저는 이러한 견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외국 정부 기관·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의를 조장시키는 이런 주장이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빨리 항의해라 이거지요. 그러면 외교 관계에서는 국가 간에 항의하려면 주권 침해의 소재가 명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관님 판단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에 의한 주권 침해 소재가 명백해졌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확인이 우선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 최근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의 입장 발표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당에서는 그러면 어느 것이 위조한 거냐, 이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위조됐고 어느 것이 위조 안 됐느냐 이런 사실 자료를 조사가 끝난 다음에 밝힐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정부 입장에서?

○외교부장관 박진 사실 조사를 먼저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태영호 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중에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된 거 밝히는 것 자체가 저는 중대한 기밀 유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오늘 명백히 이야기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왜? 이것은 제3국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제정세의 질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이거든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이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된 것인지 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이 문제는 사실 확인의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것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시초부터 ‘명백히 가짜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시작부터 이것을 위조다라는 걸 기정사실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프랑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발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보도는 허위이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프랑스는 ‘출처가 확실치 않다’ 또 영국은 ‘문건 내용의 부정확성은 심각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영호 위원 저는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

이라면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더 나아가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특히 우리 방산업과도 중요한 의미를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절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위조되어 있는지 그런 걸 밝히는 일은 철저히 없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석기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 본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양당 교섭단체 간사한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교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고 사실 외교통일위원회는 밤새도록 불켜진 상태에서 숙의를 거듭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의도 자주 열지도 않고 있고 또 열어도 오늘과 같이 위원들의 발언 수를 제한해서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하는 건 위원들을 대려해서 협의를 하되 그날이나 나중에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당 위원들의 발언권을 또는 질의권을 제한하는 걸 그 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서 합의했다고 그 합의를 강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지금 위조를……

대통령실에서는 그 해당 문건이 위조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이상민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장관께서는 조사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그렇지요? 사실관계가 파악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예.

○이상민 위원 그러면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으면 위조라는 단언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일단 초기에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이런

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박진 전체적인 것을 다 구체적으로 봤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위조했다고 단언하면 안 되지요.

○외교부장관 박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하면서도 얼마나 그게 공허한 이야기입니까?

(김석기 간사, 김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그 김태호 차장인가요, ‘악의로 도·감청한 증거는 없다’. 아니, 이거 조사했습니까, 김태호 차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단언을 내릴 수 있나요,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장관 박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언론에 보도가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장관 박진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민 위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육성으로 나갔어요, 육성으로요.

아니, 조사 중인데 위조라고 단언을 그러면 하지 말든지.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 중에 있고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그때 그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조사가 끝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조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외교부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 수궁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대통령실과는 저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늘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소통하는데 그렇게 엇박자……

하여튼 내가 장관하고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도 않아요. 장관께서도 한번 돌아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점은 수궁을 하셔야지요.

지금 위조됐다는 부분은 장관은 모르십니까? 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뭐가 위조됐다는 것인지?

○외교부장관 박진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조됐다고 하면서 위조 대상이 뭔지도 지금 서로 간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도·감청 건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하고 또 미국도 법무부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실 확인의 조치 내용이 뭘입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발언록에 나오는, 문건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한 사실이 있냐?’ 진위 확인을 해 봤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

다.

○이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면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대통령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외교부는 뭘 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는 대통령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예?

○외교부장관 박진 늘 소통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 아니, 이걸 외교부 사안 아니에요? 외교부가 지금 이 해당 사람들이 한 사람은 외교부에 복귀했다면서요?

○외교부장관 박진 예. 이제 인사이드가 있어서 외교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박진** 저희가 필요한 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박진** 예.

○**이상민 위원** 그리고 퇴직한 분, 안보실장인가요? 그분한테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로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소임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 박진** 예, 필요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일본 측의 얘기인데요. 뭐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빠져 있고, 외교청서요.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했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하고 나서 장관 표현대로 말씀하시면 ‘빈 잔의 반은 우리가 채웠고 반은 일본 측이 이제 시간을 갖고 채워 줄 것이다. 말하면 호의를 갖고 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호의가 아니라 호구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를?

○**외교부장관 박진** 그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에서 일본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강력히 항의하고……

○**외교부장관 박진** 일본의 총괄공사를 초치를 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민 위원** 그건 잘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세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방일의 성과에 완전히 재 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방일이 어떻다, 어떻다 자화자찬하셨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그 기대마저 다 저버리고 깃잡는 것 아닙니까, 일본 측이?

○**외교부장관 박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저는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일본 측하고 관계 개선의 어떤 장밋빛을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일본 측이 완강해서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 그런 현실인식을 솔직하게 국회나 국민들이나 또 야당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나은 자세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 박진**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당당한 외교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지금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교육지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일본 측이 도저히 바꿀 수가 없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소위 제삼자 채무변제를 교육지책으로 했는데 그게 무리인 것도 맞고, 국민 감정 자존감 깎은 것도 맞고, 피해자 쪽 무시한 것도 맞고, 정말 정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 결단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박진**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1분만……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 대일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피해자 쪽도 만나고 야당도 만나고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다 엉켜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일 문제도 제대로 좀 올곧게 했으면 미국과의 관계도 조그마한 실수나 이런 것들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의 것이 계속 줄줄이 이러니까 지금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미덥지가 않아요. 저는 대통령이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여러 애쓰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피해자 쪽 또 야당 직접 만나셔서 양해를 구하세요.

○**외교부장관 박진** 위원님, 저희 정부에서 한일 관계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의견을 폭넓게 들으실 수 있도록 외교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간사 간 질의 순서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끝났고 추가적인 질의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한 대로 전원회의에……

○**이재정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재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호 추후 회의에 대해서는 간사 간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0인)

김 경 협	김 상 희	김 석 기	김 태 호
김 홍 결	박 병 석	박 정	박 홍 근
안 철 수	우 상 호	윤 상 현	윤 호 중
이 상 민	이 원 욱	이 재 정	정 진 석
조 정 식	태 영 호	하 태 경	황 희

○청가 위원(1인)

이 명 수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조 기 열
전 문 위 원	정 홍 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 관	박 진
기 획 조 정 실 장	조 구 래
재외동포영사실장	최 영 한
아시아태평양국장	서 민 정
동북아시아국장	최 용 준
북 미 국 장	김 준 표
재외동포영사기획관	김 민 철
국 제 법 률 국 장	이 자 형
공공문화외교국장	이 경 아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윤 현 수
북핵외교기획단장	이 준 일

통일부

장 관	권 영 세
기 획 조 정 실 장	강 중 석
통 일 정 책 실 장	김 병 대
인 권 정 책 관	김 상 국
정 세 분 석 국 장	정 소 운
교 류 협 력 국 장	강 연 서
남 북 협 력 지 구	소 봉 석
발 전 기 획 단 장	
남 북 회 담 본 부 장	이 상 민
국 립 통 일 교 육 원 장	이 인 배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최 용 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 무 처 장	석 동 현
기 획 조 정 관	안 진 용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박정·어기구·유정주·김민석·
김홍결·황희·김경협·이원욱·윤후덕·
김상희·윤호중·이재정·조오섭 의원 발의)
3월 22일 회부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2023. 3. 29. 김상희·이재정·윤호중·유정주·
김남국·황희·김경협·이용선·박정·
김홍결·강득구·도종환·이용빈·양정숙·
양기대·박홍근·조오섭·박병석·윤재갑·
송재호·조정식·이상민·황운하·허영·
민병덕·우원식·송갑석·박상혁·최강욱·
최혜영·임종성·양정숙·윤미향·박주민·
윤영덕·김윤덕·유기홍·전용기·강민정·
서영교·고민정·강은미·이재명·정춘숙·
전해철·이수진(비)·한준호·남인순·어기구·
신영대·홍익표·홍정민·류호정·이탄희·
이원욱·장철민·진선미·양이원영 의원 발의)
3월 30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

(2023. 3. 9. 전용기·강득구·강민정·고민정·
권칠승·김상희·김철민·김홍결·박광온·
박성준·박정·박주민·신정훈·오영환·
유기홍·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용빈·
이용우·이원욱·이정문·이탄희·임오경·
임호선·정필모·조오섭·조정식·최혜영·
허종식·홍정민 의원 발의)
3월 31일 회부됨

○청원 회부

오렌지카운티 영사관 출장소 개설에 관한 청원

(2023. 4. 6.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권석대로부터
임종성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6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외교부 예규 제231호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	2023. 3. 29.	2023. 3. 28.

○보고서 송부

2022년도 외교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23. 3. 31. 정부 제출)

3월 31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1건)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유치 촉구 결의안
(1건)

한·일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 철회 촉구
결의문(1건)

독도는 우리땅!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안
(1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문(1건)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
자료로 송부됨